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회사 간의 업무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연계신용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대출금융기관”이라 함은 연계신용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금융기관을 말한다.
- ② “연계신용서비스”라 함은 온라인상에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대출금융기관의 담보관리와 고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실시간 위험관리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③ “실시간 위험관리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이라 함은 고객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고객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출금융기관이 특정 유가증권의 보유 및 매수제한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고객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계좌내의 예탁자산의 총액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예탁자산을 처분하는 등 대출금융기관의 담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의 신청)

- ① 서비스의 신청은 고객이 대출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대출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며,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방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 ②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위탁계좌 중 개인명의로의 계좌만 가능하며, 복수의 위탁계좌에 대하여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제4조 (매수의 제한)

① 국내주식을 편입한 연계신용 서비스 이용 계좌의 경우 다음 각호의 종목에 대한 매수를 제한한다.

1. 관리종목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4. 권리락(배당락) 종목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6. 감자/합병/액면분할/액면병합 종목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8.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 이하 종목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11.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12. 이유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13.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14.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15. 실시간위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② 해외주식을 편입한 연계신용 서비스 이용 계좌의 경우 실시간위험관리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정된 매수가능종목 이외의 종목에 대한 매수를 제한한다.

제5조 (보유제한종목의 설정 등)

서비스 신청시 고객은 HTS 또는 동 약관과 별도로 제공된 문서에서 개별 동의한 종목을 보유불가종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반대매매 시기를 서면,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 및 HTS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질권의 설정 및 최저담보유지비용)

- ① 고객은 “대출금융기관”을 (근)질권자로 고객을 (근)질권설정자로 하는 질권설정의뢰서를 회사 또는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질권설정의뢰서를 “대출금융기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고객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질권설정통지의 권한을 대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고객은 대출금융기관과 합의한 최저담보유지비용을 초과하는 담보비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최저담보유지비용은 개별 서비스상품별로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핵심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 ③ 담보비용은 [(매매체결기준일) 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X 100%로 산정한다.

제7조 (담보의 제공 등)

- ① 고객은 연계신용거래용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해당 연계신용거래용자액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용”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담보제공기간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제8조 (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 등을 제③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융기관”과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연계신용 대출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1. 고객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 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전항 각호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채무의 상환 또는 추가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담보증권, 그밖의 증권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는 고객과 대출금융기관간 대출계약체결시 제공한 핵심설명서의 반대매매순서에 의한다.

④ 제1항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총당한다.

⑤ 해외주식을 편입한 연계신용서비스계좌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융기관의 상품 계좌운용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는 고객과 금융기관간 대출계약체결시 합의한 대출계약약정서에 의한다.

제10조 (서비스의 해지)

서비스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 신청계좌에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전액을 인출 가능한 예수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된 경우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종료하며 신청계좌에 설정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대출금융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행사 등을 위하여 고객 신용정보를 대출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핵심설명서 제공 및 HTS상 공지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 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연계신용관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담보유지비용 관련 안내)

연계신용 서비스 이용 계좌의 경우 회사는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담보부족발생, 반대매매 예정내역, 반대매매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2. 고객의 귀책사유

②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15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규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8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03. 04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약관의 폐지)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제휴대출서비스 약관은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고객의 적용례)

기존 제휴대출서비스 약관의 적용 대상 고객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